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임직원 국외출장규칙」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4년 4월 15일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규칙 제60호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임직원 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

임직원 국외출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서면의결은 효력이 없다.”를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로 하고, 각 호를 아래와 같이 한다.

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
2.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의 “하고자 하는 임직원은”을 “실시하려는 임직원은 출장일 14일 전까지”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u>서면의결은 효력이 없다.</u> ② <생 략> ③ <생 략> 제8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국외출장을 <u>하고자 하는 임직원은</u>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6조(회의) ① ----- ----- ----- <u>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u> 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 2.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국외출장을 <u>실시하려는 임직원은</u> 출장일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